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

2010. 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 간 사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1월12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행 하면서,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에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을 별도로 제정 하였습니다.

이 운용요령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와 분담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 하는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지난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특히 주계약자 공동수급 평가 및 낙찰자결정 기준을 간단명료하게 새로 만들어 적격심사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는 기존의 원·하도급 방식의 고질적 문제점인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공사대금 적기수령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종합과 전문건설업자 간에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로 건설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금번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의 목적과 의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개념 및 효과, 제도개선 주요내용, 입찰 및 계약 업무처리절차 및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발주관서 및 건설업체 관계자 여러분이 실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2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영

- 차례 -

I.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제정 목적 및 의의	1
II.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2
III.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실시 효과	3
IV.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선 주요내용	4
V.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 및 계약업무처리와 요령	13
VI.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전문+별첨)	16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I.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제정 목적 및 의의

- 2010.1.12 행정안전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하면서 동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동계약운용요령,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관련 규정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을 별도로 분리 제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분담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입찰자는 그 내용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등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입찰공고에서부터 공동수급체구성,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의 지급 및 하자보수에 이르기 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통합·정리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결정기준을 간단명료하게 새로 만들어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한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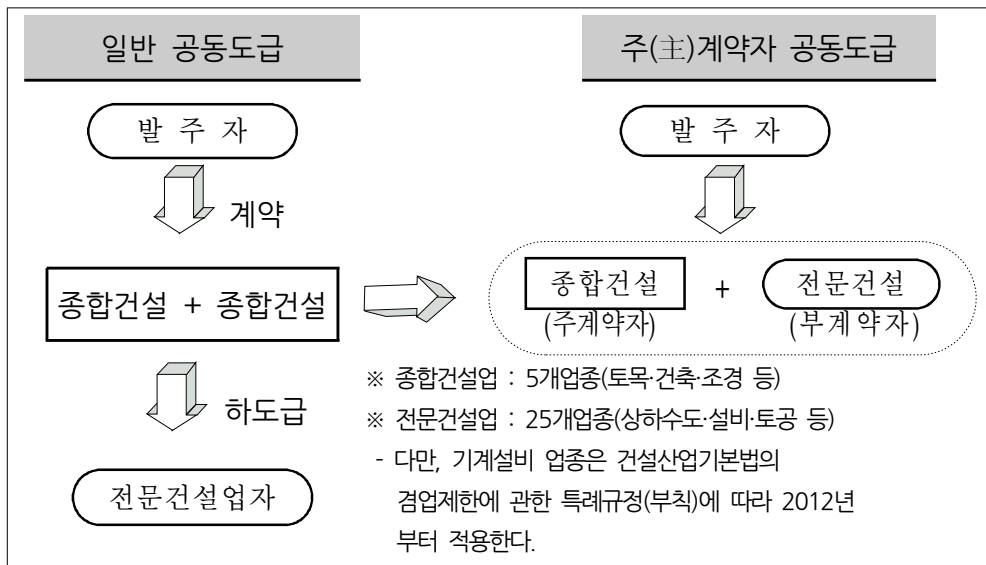
-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동 제도의 폭넓은 이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운용요령을 별도 제정함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됨

II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1.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방식

※ 일반공동도급과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비교



2. 추진경과

- 2005.8.4 : 지방계약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근거 마련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영 제88조(공동계약)
- 2005.12.30 : 행정안전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용요령 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정(행자부예규 제189호)
 - 공동도급유형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명시
 - 대상공사 : 추정가격 2억원이상
 - 대상업종 : 승강기, 삭도 등 일반·전문 겸업 가능한 7개 전문건설업종
- 2009.2.1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행안부 예규 제215호)

- 시범 대상지역(16개 지자체) : 부산 연제구청, 대구 달서구청, 인천시청, 광주시청, 대전서구청, 경기도청, 안양시청, 파주시청, 강원도청, 춘천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목포시청, 창원시청, 제주도청
- 2010.1.12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행안부 예규 제291호)
 - 주계약자공동도급운용요령 별도제정
 - 대상공사 :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종합공사
 - 대상업종 : 모든 업종 (단 설비는 2012년부터 적용)

Ⅲ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실시 효과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범실시효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행안부 보도자료, 2010.1.12)
- 시범실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 및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짐
 -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하여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하여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함
 -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됨으로써 지역 영세업자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Ⅳ.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선 주요내용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념 정립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부계약자” 명칭을 새로 부여

〈 개념 〉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
 -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 : 전체 시공의 계획 · 관리 · 조정권 부여
 -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 : 자신의 분담부분 직접시공

2. 주계약자의 권한 강화

- 입찰에 참가할 구성원별로 공종 분담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때, 원칙적으로 시공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에게 부계약자 탈퇴요청, 재시공 조치 등 전체공사를 계획 · 관리 ·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

○ 주계약자의 시공참여 비율

-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토록 함
 - 공사특성상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등

-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 요청 가능

- 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 가능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을 추정가격 2억이상 100억미만 종합공사로 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
 - 대상공사 : 추정가격 2억이상 100억미만 종합공사
 - 대상업종 : 모든 업종(다만 25개 전문업종중 기계설비는 2012년 적용)
 - 대상범위 : 전국 모든 지자체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분담 공종내역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구성원간 분담 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입찰자는 동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계약자와 구성원간 시공분담 불분명에 따른 분쟁소지 방지

○ 공동수급체 구성

- 3개 이내로 구성 원칙, 필요시 5개 이내 가능
- 공종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효율적 시공과 하자책임이 명확하도록 구분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수 및 구성원별 공종내역 입찰공고에 명시

○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건설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선택사항이나,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기로 결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와 분담 공종내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면, 동 입찰공고는 의무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5. 낙찰자결정기준을 새로 제정

○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새로 만들어 적격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 낙찰자 결정방식

- 주계약자 공동도급 낙찰자 결정방식은 적격심사 방식만 적용
 - . 최적가치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미적용
- ※ 수의계약의 경우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 가능

○ 낙찰자 결정기준

-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공히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 심사항목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3년→5년)
-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 신인도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심사항목 일부(제2호 및 제3호)만 적용
- 최저가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기준

- 공사규모별 공동수급체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기준, 세부평가방법 등)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새로 제정

1.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 실적으로만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2×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별표3-2>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15/21 - 각 구성원별 점수=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신인도(±1.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기준” <별표4>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문 건설업자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찰가격(50점)	○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의 적정성(10점)	○ “세부기준” <별표7>에 의하여 평가한다.	
시공평가(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평가 점수 - 90점 이상 : 10점, 80이상~90미만 : 8점, 75이상~80미만 : 6점, 70이상~75미만 : 4점, 70점 미만 : 2점 	

2.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 이상은 “세부기준” <별표 3-3> “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30억 미만은 “나”에 의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각 구성원별 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 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3.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기준” <별표 3-3> “나”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 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4.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0×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기준” <별표 3-4>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입찰가격(80점)	○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 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6.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시공경험 평가항목 중 실적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공사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시공경험(실적) 평가기준 개정내용>

예시)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방법

- ◎ 시공실적 평가산식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 = 실적계수 × 15 × 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2 × 시공비율)
-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함
- ◎ 개정내용
 - 실적계수 산정방식에서 분자를 키우고 (실적기간 : 최근 3년→5년), 분모를 줄여서 (실적조정 계수 : 3→2) 실적계수 상한 즉 실적 평가점수 만점인 1을 받는 업체가 많아지도록 함
 - 시공경험 : 최근 5년간 업종 실적으로만 평가
 - ※3년 → 5년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2 × 시공비율)
 - ※ 실적 조정계수 : 3 → 2

< 실적조정 계수 >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2.0 -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1.5
-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1.0 -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 1.0

7. 제한경쟁입찰의 유형별 제한기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종류별로 주계약자 공동수급체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과 제한방법을 정함

<시공실적 제한>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입찰공고에 명시)
- 주계약자가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 가능

<지역제한>

- 대상공사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경우
-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제한

<신기술, 특허공법에 의한 제한>

-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 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됨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판단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무상태로 제한하는 경우는, 구성원별로 제한
-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배제시킴

<참가자격 제한 사항>

- 건설업(종합과 전문) 등록을 중복 보유한 건설업자의 경우는 1개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가하여야 함(입찰공고에 명시)
-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심사

8. 보증서제출 및 대가지급 등 계약과정에 관한 규정

<보증서 제출>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같음
-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구성원별 각각 제출

〈계약의 이행〉

- 주계약자는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 부계약자는 직접시공 원칙으로,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현장대리인 배치〉

-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각 선임

〈부정당자 제재〉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

〈설계변경〉

-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설계변경 요청
- 신규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 관련된 구성원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 협의 결정

〈대가지급〉

-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모두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
 - 다만, 선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9. 하자구분 곤란 등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

- 하자구분 곤란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 하자담보 책임 〉

- 구성원별로 각자책임
 - 다만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구성원이 연대책임

〈하자담보 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름
 -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주공종 기준으로 정함

9. 공동경비 분담 등에 관한 규정(협정서) 신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경비 분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 경비 등에 관한 분담 원칙을 제시(협정서 제10조)

〈공동경비〉

-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공동경비의 분담 등)

V.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 및 계약업무처리와 요령

1. 계약방법의 결정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방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분담 공종내역 ○ 제한경쟁입찰 시행 여부 및 제한경쟁 입찰의 종류 등 ② 추정가격(부가세와 관급자제 공급될 부분 제외한 가격) <p>※ 계약금액이 70억원이상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p>
-------------	--



2. 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자 공동계약 방식임을 입찰공고에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구성원별 분담 공종내역을 구분 명시 - 입찰자는 이 내용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명시 ○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타 필요사항 ○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법인(또는 개인)이 전문과 종합건설업 등록을 중복 보유한 경우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해야 함을 명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 구성할 수 없음을 명시 ② 입찰공고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설명 실시 :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현장설명 미실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 7일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 : 30일 · 긴급을 요하는 공사 재공고 입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	--



3. 현장설명 (필요시)	①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함(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 33일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설명일이 됨 ③ 공동수급체 대표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또는 입찰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



4.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보증금 (면제각서로 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5. 입찰 및 개찰	<p>① 입찰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만이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는 그 대리인도 입찰참가 가능 <p>② 입찰서 접수마감 및 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 - 경쟁입찰의 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 <p>※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케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p> <p>③ 예정가격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선택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p>④ 가격입찰 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자료 제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함 -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 - 입찰가격 이외의 점수가 만점이라 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p>※ 적격심사 통과점수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공사 : 95점</p>
------------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p>① 적격심사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제출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서류보완 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p>② 적격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수해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3일(수해복구공사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p>③ 낙찰자 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공히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 심사항목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3년 →5년) -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 신인도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심사항목 일부(제2호 및 제3호)만 적용 - 최저가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심사항목, 배점기준, 세부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에 의한 공사규모별 평가기준에 의함 -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p>④ 적격심사 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
------------------	--



7.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자는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②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
------------------	---



8. 계약체결	① 계약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음
---------	--



9. 보증서 제출	①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제출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10. 계약의 이행	① 계약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도 가능. ○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는 각각 분담 부분을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직접시공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하여야 함 ③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



11. 검사 및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② 대가는 계약수량, 이행진행, 이행정도 등을 참작,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③ 선금기성금준공금 모두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함 - 다만,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



12. 준공	준공금 지급
--------	--------



13. 하자담보책임	①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짐 -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짐. ②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함. ③ 하자책임기간은,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름.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함 ※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
------------	--

Ⅶ.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전문+준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순 서 -

I. 총칙

1. 목적
2. 개요
3. 적용대상
4. 용어의 정리
5.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Ⅱ. 주요내용

1. 낙찰자 결정방식
2. 입찰참가자격
3. 공동수급체
4. 계약과정
5. 기타사항

Ⅲ. 낙찰자 결정기준

1.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2.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3.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4.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2> 각서(직접시공각서)

※ 발주관서 및 건설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이용에 편의를 드리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전문과 이 운용요령에서 준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들을 함께 수록하였음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순 서

I. 총칙

II. 주요내용

III. 낙찰자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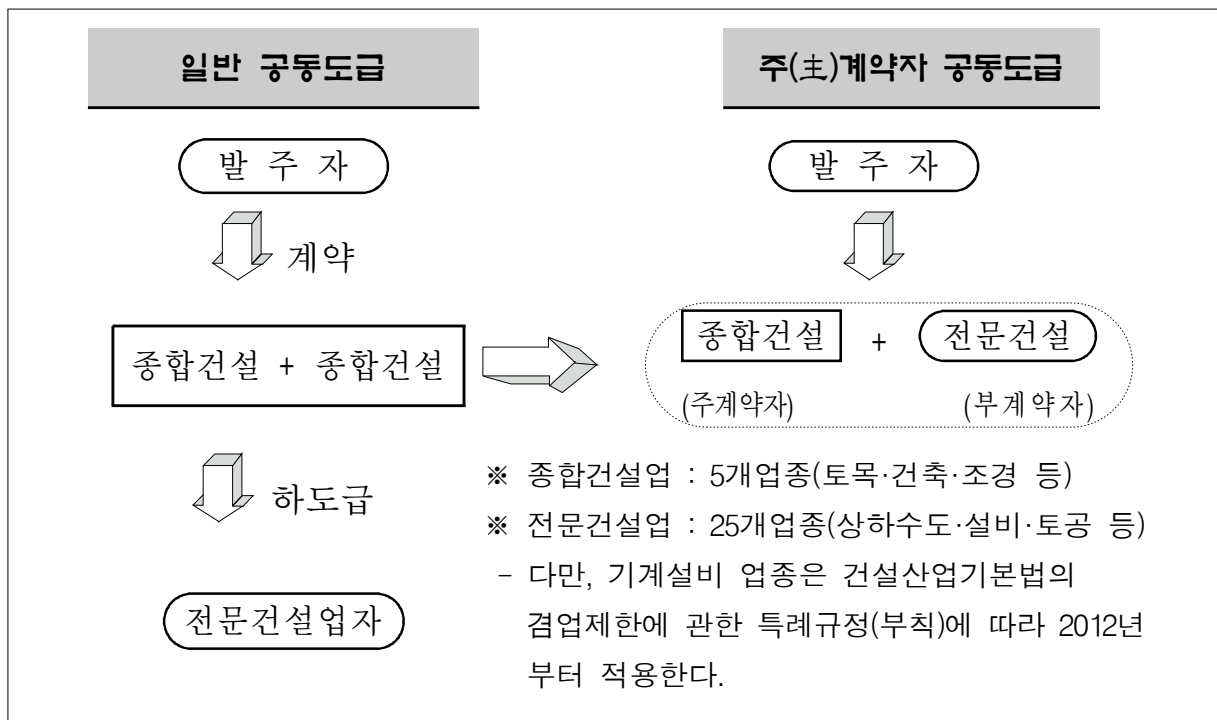
I. 총 칙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세부적인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 요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
- 추진경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근거 마련('05, 지방계약법 제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실시(16개 지방자치단체, '09.2~'09.12)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전면 확대실시('10.1~)



3.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4. 용어의 정리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추정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심사항목 :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 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말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 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조정·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 실적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Ⅱ. 주요내용

1. 낙찰자 결정방식

- 주계약자 공동도급 낙찰자 결정방식은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만 적용한다.
 - 최적가치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도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2. 입찰참가 자격

1) 면허·등록

- 주계약자는 당해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시공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3) 지역제한

-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4) 신기술·특허공법에 의한 제한

-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5)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여부를 판단한다.

6)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한한다.

7) 참가자격 제한 사항

-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시행규칙 제42조)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1) 공동수급체 구성

-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공참여비율(발주자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 공종내역의 구분

- 사업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 ◇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자가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종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규정(부칙, 2007. 5. 17)에 따라 2012년 이후부터 부계약자로 구성할 수 있다.

3)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와의 관계 등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출자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발주청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 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계약과정

1) 보증서의 제출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이행

-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에 의할 수 있다.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하자담보책임

-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진다.
 -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4)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주계약자와 협의하여 구성원(주계약자 포함) 중에서 시공자를 결정한다.

5) 대가지급

- 선금·기성금·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 다만,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기타사항

-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Ⅲ. 낙찰자결정 기준

< 기본원칙 >

- ◇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모두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 ◇ 기타 낙찰자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IV), 제출서류 등(V), 낙찰자 결정(VI), 재심사(VII),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VIII),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IX), 기타사항(X)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II를 준용한다.
-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시)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1.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 실적으로만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2×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별표3-2>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15/21 - 각 구성원별 점수=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신인도(±1.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기준” <별표4>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문 건설업자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찰가격(50점)	○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10점)	○ “세부기준” <별표7>에 의하여 평가한다.	
시공평가(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평가 점수 - 90점 이상 : 10점, 80이상~90미만 : 8점, 75이상~80미만 : 6점, 70이상~75미만 : 4점, 70점 미만 : 2점 	

2.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 이상은 “세부기준” <별표 3-3> “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30억 미만은 “나”에 의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각 구성원별 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 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3.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기준” <별표 3-3> “나”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 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4.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구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시공경험(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실적계수×10×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경영상태(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기준” <별표 3-4>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경영상태 점수×시공비율 	
입찰가격(80점)	○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 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총괄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III-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토목공종
- 나)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
- 다)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

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1) ○○○ 회사(부계약자) : 원
-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당해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의하여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당해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자는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

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③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 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③항에 의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 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청의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한다)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별첨 2〉

각 서

우리 회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 하겠으며 만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준용규정

- 순 서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IV. 평가방법, V. 제출서류 등, VI. 낙찰자 결정, VII. 재심사, VIII.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 IX.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X. 기타사항

※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

※ <별표 3-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 <별표 3-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5점)

※ <별표 3-4>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 <별표 4>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 <별표 7-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 <별지 3>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IV. 평가방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V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 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7-1>에 따른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V-4에 따라 제출하게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4.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V. 제출서류 등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IV-1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IV-1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

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신인도평가 자료 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각서(<별표 4-1> 또는 <별표 6-2>)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확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라. 시공여유율(재해복구공사에 한함)

7. 6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VI.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3.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IV-1~4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은 92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5. V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V-6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VII.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VI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 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VI-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VIII.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 가.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나. 주거은행과의 당좌거래 재개 (당좌미거래업체의 경우 당좌거래 개설)

3. 2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IX.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 적격심사대상자가 V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X. 기타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다. “가” 및 “나” 이외의 경우(별지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의 실적계수를 포함한다)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II.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 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I-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I- 4 -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 별 표 3 >

경 영 상 태 평 가 방 법

I.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인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이하 같다.)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본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 심사자료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II.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등기일(법인에 한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함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지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않음.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지 최초결산서로 봄.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의한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첨 양식6”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 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10. 심사항목에서 분모나 분자가 “0”인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심사항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하위 등급 적용	배점한도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하위 등급 적용	배점한도 적용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적용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적용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	최하위 등급 적용

Ⅲ.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3-1> “나”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 별 표 3-2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 이상 B.120% 이상 1.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3)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 이상 B.100% 이상 2.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5.0 4.5 4.0 3.5 3.0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9 1.8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린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6)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6-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 6-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7)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 별 표 3-3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0 0.9

나.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 미만	A. 100% 미만	8.0
			B. 75% 미만	B. 130% 미만	7.2
			C. 100% 미만	C. 160% 미만	6.4
			D. 125% 미만	D. 190% 미만	5.6
			E. 125% 이상	E. 190% 이상	4.8
나.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 이상	A. 100% 이상	7.0
			B. 120% 이상	B. 90% 이상	6.3
			C. 100% 이상	C. 80% 이상	5.6
			D. 70% 이상	D. 70% 이상	4.9
			E. 70% 미만	E. 70% 미만	4.2

주) : “가”, “나”에 공통적용

-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

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 6) “나”의 평가등급 중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7) “나”의 평가등급 중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9)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4 >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 미만	5.0
			B. 130% 미만	4.5
			C. 160% 미만	4.0
			D. 190% 미만	3.5
			E. 190% 이상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 이상	5.0
			B. 90% 이상	4.5
			C. 80% 이상	4.0
			D. 70% 이상	3.5
			E. 70% 미만	3.0

- 주)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설립일(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함
-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림.
- 6) 종합건설공사 이외(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전문·설비 등)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 평가가 가능함
- 7)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1. 최근 1년간 국토해양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지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 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6호는 3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 6) 전문공사는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7) 제5호 및 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 8) 제6호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별 표 7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7-1)

2. 노무비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frac{\text{직접노무비} + \text{간접노무비}}{\text{입찰금액}}$$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8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8	7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0% 이상	기준율의 80% 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5% 이상	기준율의 85% 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 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을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표 7-1 >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사종류	기본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 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 미만, 50% 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 미만, 30% 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 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 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종합건설공사의 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 -

2010년 2월 인쇄
2010년 2월 발행

발행인 이 재 영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14층
TEL (02)3284-2600
FAX (02)3284-2619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자유기획인쇄(02-2263-0270)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0